

# 戰時期 일본으로 동원된 조선인 炭·鑛夫의 임금과 민족간 격차

이우연<sup>1)</sup>

## I. 머리말

戰時期 조선인의 일본으로의 동원과 그 노동을 “강제연행·강제노동”으로 파악하는 견해에 입각하면, 조선인에게 지급되었던 임금의 성격이나 일본인과의 임금격차와 같은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강제연행·강제노동”라는 시각은 조선인들이 받은 報酬와 같은 논점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눈을 가리는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시각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는 지금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단순한 ‘노예적 노동과 노예적 생활’로 치환, 왜소화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노무동원과 관련하여 당연히 제기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아쉽게도, 현재까지 발표된 전시기 노무동원에 대한 연구는 대다수가 “강제연행·강제노동”, 나아가 ‘노예적 삶과 노동’이라는 입장에서 진행되어왔으며, 이러한 시각은 그들 조선인들의 노동과 일상을 재구성하는 데 큰 장애가 되어왔다. 그러한 시각에 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노예노동’이나 ‘노예적 생활’에 걸맞지 않는 피동원 노무자들의 주체적 성격의 발현과 다채로운 일상의 경험은 시야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은 전시기 노무동원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 오랫동안 연구의 주제와 소재를 크게 위축시키는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조선인 炭·鑛夫들의 임금은 어느 정도의 것이었으며,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었고, 일본인 노무자들과의 임금 격차는 얼마만한 것이었으며, 또 그 추세는 戰時期에 걸쳐, 그리고 戰間期와 비교할 때,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인 노무자들의 삶을 재구성하는 연구에 앞서 우선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이용되는 자료는 대부분 “강제연행·강제노동”이라는 입장에 서있는 연구자들이 편찬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II절에서는 조선인 탄·광부들이 받은 임금이 어떤 수준에 있었는지, 통설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사실상 없거나 미미한 것이었는지 재검토한다. III절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임금을 비교하여, “민족차별적 임금”을 받고 있었다는 통설이 타당한 것인지 점검한다. V절에서는 전절에서 밝힌 일본인과의 임금격차가 전시기에, 또 戰間期와 비교하여 어떻게 추이하였는지에 검토한다. 맺음말에서는 이상을 요약하고 이후 과제를 밝힌다.

## II. 임금 수준

---

1) 낙성대경제연구소.

1939년 9월, 이른바 ‘募集’ 이후 일본으로의 勞務動員이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戰時動員’이므로 임금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노무동원 개시 이래 1944년 10월부터 시작된 ‘徵用’ 단계에서도 피동원자에게 임금이 지불되었다.<sup>2)</sup> 본고에서 다루는 광부들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 금액은 얼마나 되고, 징용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비교하여, 어떤 수준이었을까? 그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될까? 또한 임금이 지불되었다면 그 돈은 어디에 사용되었을까?

조선인에 대한 전시동원이 개시된 후 얼마지 않은 1940년 11월, 日本鑛山協會는 본토 내 주요 78개 炭鑛山의 조선인 광부에 대해 皇民化教育 등 “指導訓練施設”, 임금 등 조선인에 대한 “待遇”, “送金 및 貯蓄”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3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半島人勞務者に關する調査報告」로 펴냈다(朴慶植 編 1981 第2卷: 1-300). 표 1은 그로부터 1개월 평균임금, 1인당 평균저금 및 가족송금이 있는 모두 나와 있는 46개 탄·광산의 자료만 뽑은 것이다. 1개월 식비는 1일 식비에 31을 곱하여 계산하였고, 그중에서 “\*”를 붙인 것은 식비 자료가 없어 자료가 있는 탄·광산의 1일 식비 중 최고 값인 60전을 이용하여 일괄적으로 18.6엔으로 산입한 것이다. 차액은 1개월 평균임금에서 저축, 송금 및 식비를 뺀 값이다. 식비를 제외하면 모두 산포도가 매우 높아 광산마다 임금, 저금 및 송금 상황이 제각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평균값이 가지는 의미가 제한적이겠으나, 다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평균을 이용하여 서술하도록 한다.

표 1 1940년 주요 광산의 임금과 지출 (단위: 円, 구성비는 %)

2) 피징용자의 임금에 대해 『國民徵用の解説』에서는 다음과 설명한다. “問 :징용된 경우 급여는 대체로 어느 정도인가? 答: 일본에서는 전국적으로 應徵士의 급여를 통제하고, 지역별로 또 연령별로 대체로 일정하다. 예를 들면 造船공장에서는 당초의 3개월간은 60엔 정도이지만, 3개월이 지나면 100엔 이상이 된다. 또 石炭山에서는 採炭夫는 대략 최고 6円, 최저 3엔, 평균 4.50엔으로 훈련기간 중에는 2.50엔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조선 내에서도 응징사에 대한 급여에 일반보다도 다소 우대한다. 또 이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조선 내에서 징용할 경우 또는 내지로 징용할 경우에도, 조선총독부가認可하는 것으로 한다”(國民總力朝鮮聯盟 1944: 42-3).

소속	탄광명	종류	1개월 평균임금	1개월 평균저금	1개월 평균송금	1개월 식비	차액	
札幌 관내	歌志内 탄광	탄광	84.29	6.75	41.50	18.6*	17.44	
	空知 탄광	탄광	78.33	15.10	25.78	13.95	23.50	
	雄別 탄광	탄광	71.39	18.82	24.92	17.05	10.60	
	春採 탄광	탄광	99.06	10.00	20.00	18.6*	50.46	
	夕張 탄광	탄광	68.89	8.18	26.10	14.57	20.04	
	三井砂川 탄광	탄광	80.37	20.16	23.49	13.95	22.77	
	豊羽 광산	광산	85.00	35.00	45.00	18.6*	-13.60	
	靜狩 광산	광산	80.04	20.17	24.93	16.28	18.67	
	鴻之舞 광산	탄광	85.46	36.78	31.94	17.05	-0.31	
仙臺 관내	高玉 광산	광산	51.34	13.55	16.78	12.40	8.61	
	細倉 광산	광산	58.42	2.50	16.00	15.50	24.42	
	舟打 광산	광산	70.00	6.00	50.00	18.6*	-4.60	
東京 관내	佐渡 광산	광산	66.77	11.44	21.16	12.40	21.77	
	河津 광산	광산	58.98	16.56	23.51	10.85	8.06	
大阪 관내	土倉 광산	광산	80.00	10.00	30.00	18.60	21.40	
	大久喜 광산	광산	70.00	5.00	20.00	18.6*	26.40	
	白瀧 광산	광산	67.57	23.04	19.47	10.85	14.21	
	紀州 광산	광산	67.09	4.20	6.10	15.50	41.29	
	大屋 광산	광산	85.50	7.50	17.00	18.6*	42.40	
	鱒淵 광산	광산	64.10	3.70	40.00	13.95	6.45	
	今出 광산	광산	65.00	3.00	25.00	13.95	23.05	
	別子 광산	광산	62.11	19.40	29.00	9.30	4.41	
福岡 관내	山陽無煙炭	탄광	79.64	38.13	57.28	12.40	-28.17	
	飯塚 탄광	탄광	76.10	10.39	21.13	16.43	28.15	
	新入 탄갱	탄광	74.67	15.00	25.00	14.88	19.79	
	方城 炭坑	탄광	76.48	11.00	35.00	14.88	15.60	
	鯉田 탄갱	탄광	80.35	20.00	20.00	14.88	25.47	
	上山田 탄갱	탄광	74.10	16.00	35.00	14.88	8.22	
	崎戶 탄광	탄광	77.10	8.00	32.33	18.6*	18.17	
	麻生商店	탄광	72.00	22.50	22.50	15.50	11.50	
	吉隈탄광	탄광	50.61	6.73	27.50	15.50	0.88	
	峰地·火峰 탄광	탄광	64.48	15.38	22.24	13.95	12.91	
	目尾 탄광	탄광	72.96	17.10	20.80	13.18	21.89	
	下山田 탄광	탄광	70.22	12.50	10.88	13.95	32.89	
	平山 탄광	탄광	73.87	11.07	25.00	15.50	22.30	
	豊國 탄광	탄광	65.61	10.00	20.00	15.50	20.11	
	山野 탄광	탄광	40.00	6.23	21.30	17.05	-4.57	
	猪之鼻 탄광	탄광	90.00	16.22	13.51	15.50	44.77	
	中鶴第一坑	탄광	64.22	6.00	6.50	13.95	37.77	
	大之浦 탄광	탄광	66.30	5.50	7.50	13.95	39.35	
	岩屋 탄광	탄광	72.88	11.92	23.29	18.6*	19.07	
	吉野浦 탄광	탄광	67.00	16.20	30.35	15.50	4.95	
	潛龍 탄광	탄광	63.86	13.41	27.24	15.50	7.71	
	池野 탄광	탄광	76.64	6.01	14.96	15.50	40.17	
	神田 탄광	탄광	85.47	10.29	28.75	15.50	30.93	
	佐賀關 광산	광산	75.64	12.73	16.72	12.40	33.79	
	평균 구성비			71.95 (100.0)	13.37 (18.6)	24.84 (34.5)	15.24 (21.2)	18.50 (25.7)

자료: 본문 참고.

미리 지적해둘 점은 “1개월 평균송금”이 在籍者 또는 한 달에 하루 이상 작업에 참가한 稼動者の 1인당 평균액이 아니라, 송금을 행한 사람들만의 평균이라는 사실이다. 이 자료의 三

井砂川の 서술에서 1940년 7월 말 현재 재적인원은 622명이고, 3-6월 평균 예금자 수는 519명이었다(30-2쪽). 이로부터 계산하면, 재적자의 83.4%가 평균 23.49엔을 송금한 것이다. 明延 광산에서도 동년 1-6월의 월평균 재적인원과 송금인원이 나와 있어 재적자 중 송금한 사람은 71.8%로 계산된다(98-101쪽). 生野 광산에도 마찬가지로 기록이 있어 송금자는 72.8%였다(153-5쪽). 高屋 광산의 경우, 3-7월의 월평균 가동인원과 송금인원이 나와 있어 가동인원의 70.1%가 송금에 참여한 것이 된다(54-9쪽).<sup>3)</sup> 그런데 勞動科學研究所(1943a)의 「半島勞務者勤勞狀況に關する調査報告」(이하 「조사보고」로 줄임)에 게재된 1941년 북해도 모 탄광의 송금인원은 재적인원의 34.0%에 불과하였다(朴慶植 編 1982 第1卷, 373, 482쪽) 1943년 초 북해도 住友(株)鴻之舞 광산에서 송금을 하는 사람은 전체의 2-30%였다고 한다(古庄正 2012: 358). 표 1은 전시 노무동원이 실시된 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광산과 勞務計에 익숙하지 않은 조선인들이 회사 측의 강권에 이끌려 다수가 송금에 참여한 상황을 나타내고, 「조사보고」나 古庄正은 회사의 권유를 뿌리치고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임금을 지출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식대와 저축은 임금에서 공제되었다. 저축은 대부분 강제저축이므로 표 1의 저축액과 식비는 임금에서 공제되었을 것이다. 이에 더해 세금, 公務費, 배급물자대금, 의복비월부금 등도 공제되었을 것이다. 후술하는 1944년 자료에서 평균적인 광부는 임금의 16.7%를 여기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차액 25.7%에서 16.7%를 빼서 저금과 식비에 합산하여 공제액을 구하면 56.5%(18.6+21.2+16.7)가 된다. 그 나머지 43.5%를 이용하여 송금을 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34.5%를 송금하고 나머지 9%를 용돈으로 사용하며, 송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43.5%를 온전히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추론은, 단편적이거나, 지금까지 간행된 자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표 2가 그것이다. 1941년, 茨城縣 소재 日立 광산의 저축과 송금이 1개월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40년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 1943년은 송금액이 임금의 약 30%라는 기술이 있어 삽입한 것이다. 1944년의 자료는 일일 임금 7-8엔, 月收 150円인 九州지역의 평균적인 탄광부의 지출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로부터 계산한 결과, 1940년과의 차이는 송금의 비중이 약간 낮고 잔액의 비중이 높은 데 있을 뿐, 공제액과 그 나머지의 비중은 거의 비슷하다. 1945년은 住友鑛業(株) 伊奈牛鑛山の 자료로부터 계산한 것이다. 여기에는 44명의 조선인 광부의 4월분 稼動賃金, 控除額 및 假足送金額이 나와 있고, 표 2에는 그 평균을 게재하였다. 이 지출구성 또한 1940년이나 1945년의 그것과 대차가 없음을 알 수 있다.<sup>4)</sup>

표 2 임금의 지출 (단위: 円, 구성비는 %)

3) 저축의 경우 강제저축으로 인해 저축한 인원수는 재적인원나 가동인원과 대략 비슷할 것이므로, 이런 문제는 없다고 보아도 좋다.  
 4) 표 2는 임금수입의 지출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 표로는 전시기 임금의 추이를 논할 수 없다. 탄광산의 임금은 꾸준히 상승하였다. 1939년 9월 18일의 「價格停止令」에 의해 가격, 지대, 요금, 운임, 임금 및 봉급의 인상을 모두 금지되었지만, 그러나 가격정지는 매년 갱신되었다고 한다(Cohen 1949: 358). 1940년 10월 19일에는 「賃金統制令」이 발령되었지만, 만성적 노동력 부족 하에서 기업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임금통제의 틀 외에서 임시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의 제 수당 지급하였다(原郎 1976: 242). 탄광에서도 노무자를 잡아두기 위해 임금이 인상되었고, 남자 일일 평균임금은 1940년 3.08엔에서 44년 5.67엔으로 상승하였다(Cohen 1949: 166).

연도	공제액				송금	잔액	계
	식대	저금	기타	소계			
1940	15.24 (21.2)	13.37 (18.6)	11.78 (16.4)	40.39 (56.1)	24.84 (34.5)	6.72 (9.3)	71.95 (100.0)
1941		11.50 (21.7)			21.52 (40.6)		52.96 (100.0)
1943					(30.0)		(100.0)
1944	18.00 (12.0)	45.00 (30.0)	25.00 (16.7)	88.00 (58.7)	40.00 (26.7)	22.00 (14.7)	150 (100.0)
1945		67.16 (53.8)		67.16 (53.8)	36.88 (29.6)	20.75 (16.6)	124.79 (100.0)

자료: 1940년은 日本鑛山協會(1940), 「半島人勞務者に關する調査報告」, 朴慶植 編(1981) 第2卷, 1-300. 1941년은 勞動事情調査所(1942), 「日立鑛山に於ける半島人勞務者と語ろ」, 朴慶植 編(1981) 第1卷, 90. 1944년은 石炭統制會九州地部(1945), 「炭山に於ける半島人の勤勞管理」, 朴慶植 編(1991) 第2卷, 209. 1945년은 守屋慶彦(1996: 128).

요컨대 임금은 강제저축, 식대, 기타 잡비를 공제하고 적어도 4할이 남는 액수였다. 이 4할 이상의 현금을 두고 회사 측은 송금을 강권했지만, 그에 따르지 않는 조선인도 많았다. 그들은 송금 대신 현지에서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는 현장에서는 숙사(寮)를 감독하는 노무계원, 즉 寮長과 노무자가 벌이는 실랑이 속에서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4개 탄·광산을 현지조사서 결과를 담은 「半島勞務者勤勞狀況に關する調査報告」에는 이것이 “저축의 장려”라는 항목에 소개되어 있다. “B 탄광”에서는 “매월의 급료는 요장의 손을 거쳐 지불되는데, 그때 각 개인의 저금액, 송금액을 본인과 의논하여 합의하고, 그 잔액을 건네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朴慶植 編 1982 第1卷: 471).<sup>5)</sup>

선행연구에서는 강제저축, 각종 적립금, 식대 등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전혀 없거나, 아주 적은 액수의 “용돈”에 불과하였고, 따라서 송금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였다.<sup>6)</sup> 그러나 강제저축 등을 공제하고도 임금의 4할 이상이 남았고, 이것으로 자의에 의해서든, 노무계의 강요에 못 이겨서든, 가족에게 송금을 하거나, 그것이 아니면 현지에서 소비하였다. 조선인(99), 43, 1937년 7월 19일에 발표된 「右の要綱(朝鮮人勞働者募集要綱)」을 말한다: 取扱に關する細目]이래 終戰까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남기고 모두 송금·저축’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조선인 노무자들의 저항으로 이 원칙은 지켜지지 못했다. 작업복과 식사는 공제분에 들어있고, 독신자들을 위한 숙사는 무료였다. 이렇게 생활에 필수적인 금액과 저축이 공제된 후 남는 돈 중에서 송금하지 않은 돈은 양복 구입, 각종 음식, 도박, 술과 담배 등에 사용되었다. 자세한 것은 별고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탄광을 중심으로 임금계산 방식

5) 또 다른 예로서 A 탄광의 경우, “급료는 요장의 손을 통해 지불되는데, 1인 1월 10円 이상을 건네주지 않고, 잔액은 저금 또는 송금시킨다(회사저금 年利 6分5厘). 2년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1,300엔을 저축하여 귀국한 예가 있다. 10円의 용돈의 주요한 사용처는 음식비, 도박 등이라고 하는데, 저들은 양복등을 구입하고...”라고 하였다. C 탄광에서는 “급료는 모두 요장의 손을 거쳐 인도하고, 용돈은 원칙적으로 월10円 이하에 그치며, 그 외는 저금, 송금(송금은 원칙적으로 20-30엔 이하로 한다)에 할당하게 한다” 적극적으로 송금한 사람들에게는 이 “10円”의 원칙이 지켜졌던 것이고, 송금하지 않는 자들은 회사에서도 다른 방도가 없었을 것이다. 거꾸로 송금 액수 또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표 1에서 알 수 있다.

6) 朴慶植 1965: 87; 長澤秀 1977: 131; 山田昭次 1978: 650; 林えいだい 1991a: 36; Cook and Cook 1992: 196; 김민영 1995: 86-7; 김인덕 2002: 49-50; 전기호 2003: 113-4; 정혜경 2006: 171-2; 이상의 2014: 16; 허광무 2014: 64.

에 대해 살펴보겠다.<sup>7)</sup>

탄·광부의 임금은, 林えいだい도 인정하듯이(1991: 36),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계산되었다. 당시 임금체계에 대해 가장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은 勞動科學研究所(1943b)의 「炭嶺における半島人勞務者」이다. 이를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新入”은 “3개월”의 훈련기간에는 “定額日給을 지급한다. 이 기간 이후, 採炭, 掘進, 充填, 運搬 등 基幹 작업에 있어서는 團體生産高 賃金率이 일반적이다.<sup>8)</sup> 정액일급제가 행해지는 것은 기계, 공작, 選炭, 잡역 등이 다. 이하에서는 채탄, 굴진을 중심으로 설명한다.<sup>9)</sup>

1. 임금총액의 결정. 채탄은 1톤당 단가\*出炭高, 굴진은 1坪當단가\*굴진평수로 임금 총액을 계산한다. 2. 임금총액의 수정. 미리 정한 출탄고 이상으로 출탄한 경우, 函當 소정의 장려금을 총액에 가산한다. 채탄부가 채탄 이외 다른 작업을 행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총액에 가산한다. 근로보국대나 신참자에 의해 총출탄량의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능저하 보조”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가산한다. 조선인 노동자가 다수 혼합 배치된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가산액을 적용한다 또 신입 미숙련자의 교육, 인솔지도에 대한 수당을 총액에 가산한다. 3. 톤당 단가의 결정. 톤당 생산비중 노임부분을 고려하고, 다른 사업장과의 균형을 감안하고, 계절적인 이유로 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정을 참작하고, 저질 광석이 많은 막장 또는 단층에 조우하여 출탄고가 떨어지는 경우에도 그 사정을 참작하여 톤당 단가를 결정한다. 4. 총출탄고의 결정 방법. 출탄고는 函의 수로 계산된다. 1함당 적재 톤수는 目測에 의해 결정한다(목측이라고 해도 實測과 거의 차이 없음이 널리 인정되고 있었다고 한다). 또 버력 혼입이 심한 경우에는 일정률에 따라 함수를 삭감한다(이 함수 계산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접한 조선인들 중에도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5. 이상과 같이 결정된 임금총액은 탄부 각각의 기능 정도와 담당 업무를 고려하여 책정한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현장 係員이 판정하는 이 按分の 비율을 歩率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최저를 10으로 하고 최고를 16으로 하여 각 탄부에게 보을을 부여하고, 이 보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朴慶植 編 1976 第5卷: 769-70).

실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가 이루어진 그날의 출탄은 247함, 함당 단가는 0.75엔이었다. 버력 혼입에 의한 控除 함수는 20함, 적재 불충분에 의한 공제 함수는 1.9함, 소정량 이상을 적재하여 증가된 함수는 0.6함이다. 따라서 순출탄고는  $247 - 20 - 1.9 + 0.6 = 226.15$ 함이 되고, 총지불 임금은  $0.75 * 226.15 = 162.83$ 엔이다. 그런데 이날 근로보국대가 혼입하였고, 그에 의한 기능저하 보조로서 함당 20전을 추가하는데, 그 총액은  $0.20 * 226.15 = 45.20$ 엔이 된다. 또한 근로보국대원 1인당 신참교육 수당을 0.3엔으로 하여  $0.30 * 18명 = 5.40$ 엔을 추가한다. 따라서 임금총계는 192.01엔이다. 이를 按分하는 방법과 같다. 16-18세로서 1개월 이상 경험자(일본인)를 10으로 할 때, 이날 실제 최저 기능자는 11.5, 최고 기능자는 16.0의 평가를 받았고, 이 비율의 합계는 588.4이었다. 즉 기능정도 1에 대한 임금은  $192.01 / 588.4 = 0.328$ 엔이 된다. 따라서 기량 최저 11.5인 자는  $0.328 * 11.5 = 3.77$

7) 1939-45년간, 144,004명이 광산으로 동원되었는데, 그중에서 121,574명, 즉 84.4%가 석탄산에 동원되었고, 그 속에서도 갱내 採炭夫가 가장 많았다(이우연 2015: 6).

8) 일본어로는 “團體出來高拂制度”라고 하였다. “출래고불제도”는 정진성(1989)의 예에 따라 생산고 임금을 번역하였다. “단체”라는 말이 붙은 것은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업조 전체의 임금을 먼저 결정한 후, 그를 분할하여 개인별로 일정액을 지불하였기 때문이다.

9) 조선인(99 299) 金屬山에서도 갱내부는 생산고 임금을, 갱외는 정액제였고, 이는 일본인인과 동일하였다. 훈련기간에는 臨時雇로서, 기본임금인 초급 1.2円부터 1.3円이 지급되었고, 그 종료 후에는 생산고 능률급이 추가되었다.

엔, 기량 최대 16.0인 자는  $0.328 \times 16.0 = 5.25$ 엔의 일급을 받는다(朴慶植 編 1976 第5卷: 770-71).

조선인과 일본인에게 동일한 임금체계가 적용되었지만, 이렇게 복잡한 계산이었기 때문에 오해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보울의 鑑定을 비롯하여 민족 차별적 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있었던 것이다.<sup>10)</sup> 조선인과 회사가 대립한 분쟁의 추이를 보면, 1939년과 1940년에 빈발하던 임금문제로 인한 분쟁이 1941년 이후에는 거의 없어지고(朝鮮人強制連行實態調查報告書編輯委員會 1999: 354)(이하 “조선인(1999)”로 줄임), 식량사정의 악화와 함께 그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였다고 한다.<sup>11)</sup> 조선총독부와 일본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고 있었다. 1942년 2월 13일, “관알선”을 도입하면서 후생성·노무성에 공포한 「移入勞務者訓練及取扱要綱」에서는 “임금은...각인의 능률, 勤怠에 따라 차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충분히 이해시킬 것”(長澤秀 編 1992 II卷, 77)을 요구하였고, 동월 20일, 총독부에서 제정·공포한 「内地移入斡旋要綱」에서도 “종업조건을 특히 철저히 할 것...각 개인별로 능력에 따라 수입에서 당연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납득시킬 것”이라고 하였다(前田一 1943: 51).<sup>12)</sup>

西成田豊은 1942년 북해도 住友(株)鴻之舞鑛業所의 자료를 이용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는 결코 적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1997: 277) 그 자료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昭化十七年七月八日

公州郡木洞面長 木村清治

住友鴻之舞鑛業所長 앞

勞務者の賃金支拂依頼의 件

... 昭和十年(1940년: 필자) 3월 22일부터 靑光산에서 노무자로 종사한 바, 고용기간 만료로 올해 4월 27일에 귀향한 上記 노무자의 신청에 따르면, 출발 때 귀사는 바쁜 일에 쫓겨 임금 수령의 정확을 기하지 못하고, 단지 귀사의 世話係로부터 船中에서 口頭로 24日 分の 임금 잔액을 뒤에 송금하겠다는 뜻을 그에게 알려준 바, 귀향 후 이미 2개월...아직 하등의 送金이 없기 때문에, 본인으로부터 수차례의 의뢰를 받아, 부득이 통보를 드리므로, 繁忙중 ... 상세히 조사한 뒤, 그 내용에 일단 회답... 상기와 같이 의뢰합니다.

記

忠淸南道 公州郡 木洞面 利仁里

崔錦玉

西成田豊은 이를 두고 “임금 수령의 정확을 기하지 못하고”라고 할 만큼 “조선인에 대한 임

10) 조선인(1999)도 임금계산이 복잡하여 그 속에 민족차별이 개재하거나, 불신을 낳기 쉬운 구조였음을 지적하였다(253).

11) 조선인(1999)는 조선인들도 시간이 감에 따라 근면정도, 자신의 육체적 힘에 의해 임금의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복잡한 임금체계에 대한 이해보다는 임금과 관련하여 회사측에 일종의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임금과 관련된 분쟁의 또 하나의 이유는 모집할 때는 최고표준을 제시하고, 현장에서는 생산고 임금율이나 고정 日給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司法省刑事局 1941, 朴慶植 編 1981, 『朝鮮研究資料集』 第4卷, 1233). 조선인(1999)에 따르면, 1944년 1월부터 12월까지 북해도내 이입조선인에 의한 분쟁의 총 건수는 134건(참가인원 10,166인)이었고,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근로관리문제로서 48건(그중에서 係員 폭행이 24건), 다음으로 定着·歸鮮 문제 27건(그중에서 정착반대가 23건). 끝으로 식료·의료 문제가 27건(1,593)이었고, 초기에 많았던 임금문제로 인한 분쟁은 7건(참가인원 200인)으로 감소하였다(326).

12) 전시 노무동원된 사람들도 ‘많이 하면 많이 준다’고 증언하였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줄임) 2005: 287; 위원회 2007a: 109, 159, 551; 위원회 2009a: 164.

금관리가 날림이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는 계약기간 종료 후 미불임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광산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1939년 일본으로의 조선인 노무동원이 시작된 이래 고용주는 그들의 노동, 생활상태, 임금 등 노무관리에 대한 실태를 매월 지방장관에게 보고해야 했다는 점이다. 이는 1939년 7월 29일, 厚生·內務 兩省次官에 의한 地方長官 앞 通牒 「朝鮮人勞働者募集要綱」이 제정되면서, 이와 함께 발표된 이 요강의 「取扱に關する稅目」(조선인 1999: 44)과 「朝鮮人勞働者募集手續」에 규정된 사업주의 의무사항이었다(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團 編 1974: 622). 또한 같은 날 발표된 「朝鮮人勞働者内地移住に關する事務取扱手續」에서는 매달의 작업 상황, 임금, 저축, 송금 등을 관할 경찰서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住友鑛業(株)歌志内鑛業部 1940b, 長澤秀 編 1996, II 東日本編: 15-6).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인에 대한 임금지급을 체계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봐야할 것이다.<sup>13)</sup>

임금이 도착하지 않자 노무자 崔錦玉은 면사무소를 찾아가 항의하였고, 면장은 공문으로 이런 사정을 알리고 회답을 요구하였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守屋慶彦은 일본에서 가족에게 송금한 돈이 도착하지 않아 면사무소와 흥지무광산 사이에 주고받은 왕복문서가 있다고 하였는데 (1996: 134-5), 이 건에서도 광산 측의 회답이 있었을 것이다. 조선인에 대한 임금지급을 지방장관에게 매월 보고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임었고, 조선으로 송금하고, 만약 그것이 도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해결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西成田豊이 제시하는 사례는 전시동원된 조선인 노무자의 임금 관리가 오히려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을 해석되어야 할 일이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관리되었기에, 1942년에 한 탄광에서 조선인을 상대로 “즐거운 일”을 조사한 결과 첫 번째로 “給料日”을 꼽았던 것이다. 송금과 관련해서는 별고에서 詳述할 계획이다.

1943년, 金鑛山을 전면 廢·休業하는 조치가 취해지자 상기 흥지무 광산은 조선인 광부들을 九州의 탄광으로 전환 배치하였다. 정혜경은 이때 급여 관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18-20개 항목에 달하는 급여, 수당 및 저금이 정산, 지급되었음을 지적하고, 전환 배치 과정에서 임금 등을 규정한 것을 두고 “강제성”을 입증하는 근거라고 하였다(2011: 574-5). 이 또한 위의 사례와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예컨대 守屋慶彦은 같은 광산에서 전환 배치되는 자에게 임금을 정산하고 수당, 저금을 지급한 것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였고, 일본인과 다른 것은 전환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월급 3개 월 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 휴업수당, 酒肴料, 전별금 등을 지급한 점이라고 하였다(1991a: 29).

### III.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임금격차

1939년 9월 이후의 ‘모집’, 1942년 2월 이후의 ‘관알선’, 그리고 1944년 10월 이후의 ‘징용’에 이르기까지, 피동원 노무자들에게는 임금이 지불되었다. 우선 ‘모집’의 경우 그 시행을 알린 1939년 7월 29일, 내무·후생 양 차관의 지방장관 앞 통첩, 「朝鮮人勞働者内地移住に關する方針」(조선인 편 1999: 483)에서는 일본의 고용주에게 “조선인노동자의 대우에 대해서는

13) 다음과 같은 증언도 참고된다. 1941년에 樺太로 동원된 사람의 증언이다. “問: 나오실 때 임금은 받으셨어요? 答: 거기야 일한 거고, 뭐이고 일하면 저 그 달에는 가면 딱 월급 주는데. 뭐. 월급 준 게, 월급 떼먹거나 그런 건 없어. 일한 거는 다 받으셨네요. 응 일한 거 까장은, 일한 거 까장은 그 달에 작작 받으니까”(위원회 2007a: 159).

가능한 한 내지인노동자와의 사이에 차별이 없도록”할 것을 요구하였다.<sup>14)</sup> ‘관알선’을 공포한 1942년 2월 13일의 각의결정, 「朝鮮人勞務者活用に關する方策」(朴慶植 編 1986 제4권: 24-5)에서도 “본 요원의 처우에 대해서는 形而上下에 걸쳐 내지인과 다를 바 없게 할 것”이라고 규정하였다.<sup>15)</sup> 끝으로 ‘징용’에 있어서도 “임금은 물론, 기타의 처우에 있어서도, 전혀 내선인 간에 차별”이 없음을 강조하였다(國民總力朝鮮聯盟 1944: 41-2)<sup>16)</sup>

개별 광산에서도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임금 차별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앞 장에서 소개한 「半島人勞務者に關する調査報告」에서 “임금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 답한 것은 52개 광산이었다(朴慶植 編 1981 第2卷: 1-300). 그중에서 21개 광산은 명시적으로 일본인과 ‘차이가 없다’거나 일본인과 ‘마찬가지’라고 답하였다. 임금체계가 동일하다는 뜻이지 임금액이 같다는 것은 아님은 물론이다. 1940년, 住友鑛業(株) 歌志內鑛業部(炭山)의 「就業案内」에는 “임금은 稼高拂(생산고 임금율: 필자)로 한다”고 하였다(住友鑛業(株)歌志內鑛業部 1940c: 22). 磐城탄광의 「就業規則」에는 “三 임금에 관한 사항 1. 稼高拂...단가를 정하고 작업의 산출고에 따라 계산하고... 공동작업의 경우는...按分하여 임금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다(長澤秀 1987: 168). 이 「취업안내」와 「취업규칙」의 공통점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구별이 없다는 점이다. 양자를 별도로 취급하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sup>17)</sup> 주우광업(주) 가지내광업부의 「進駐軍關係綴」에 따르면 전후 조선인들은 파업 중에 ‘終戰 이전 일본인보다 50錢이 낮았으므로 추가로 50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회사는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차이는 없었고, 임금은 경험, 기량, 노동량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답변했으며(1945: 415-7), 이후 이 문제는 다시 거론되지 않았다.

1943년, 東京地方鑛山部會의 자료에서 佐渡鑛業所(탄산)는 “정부방침에 따라 조선인과 일본인의 무차별 취급 방침”으로서 대우는 “内地인과 마찬가지로”이며, 임금계산 방식은 “半島 勞務者 중 대부분을 점하는 갱내부에 대해서는 내지인 노무자와 마찬가지로 연령, 경험 등을 고려하고 업무의 종류 및 난이도에 따라 미리 査定한 청부단가에 의해 그 稼高에 따라 지급하고, 아주 소수인 갱외부에 대해서는 정액급을 지불한다”고 하였다. 동년, 北海道炭鑛 勞務部長 前田一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임금 구분은 없고, 단지 근면성과 기량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고 하였다(1943: 149)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 그리고 개별 광산들이 천명한 바와 같이 임금에 있어서 민족차별은 실제로 없었던 것일까? 단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작업을 하는 일본인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던 것은 아닐까? 이에 대해 처음으로 분명한 답변을 내놓은 것은 朴慶植(1965)이며, 오늘날까지 학계의 주류, 통설로 남아있다. 그 근거는 표 3, 北海道 모탄광의 민족별 월 임금분포이며, 출처는 勞動科學研究所에서 1942년 1월 15일부터 2월 7일까지 실

14) 같은 날 후생·내무 兩省 차관에 의해 지방장관 앞 통첩, 「朝鮮人勞働者募集要綱」에 첨부된 「朝鮮人勞働者移住に關する事務取扱手續」의 13항에서도 “적어도 내지인 노동자와 차별적 취급을 하는 일이 없게”할 것이 요구되었고(前田一 1943: 31), 「朝鮮人勞働者募集要綱に關する細目」에서도 “차별적 취급 없게”할 것을 규정하였다(조선인 1999: 43). 1939년 9월에는 「朝鮮人勞働者募集手續」이 발표되었고 “내지인 노동자와 차별적 취급 없도록 할 것”을 규정하였다.

15) 같은 날 공포된 厚生省의 「移入勞務者訓練及取扱要綱」과 2월 20일, 朝鮮總督府의 「朝鮮人内地移入斡旋要綱」에서도 마찬가지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라는 규정을 두었다(장택수 편 1992 II卷: 76; 朴慶植 編 1976 第4卷: 1254).

16) 北海道炭鑛汽船(株)가 軍需大臣과 總督府에 보낸 「徵用申請書」의 “피징용자의 급여”란에는 “국민징용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厚生大臣의 인가를 받은 피징용자급여규칙에 의해 지급한다”고 기입하였다(守屋慶彦 1995: 40). 이 「피징용자급여규칙」에는...(?)

17) 長澤秀와의 통신에 의한다.

시한 조사의 결과로서 발간된 「半島勞務者勤勞狀況に關する調査報告」의 90쪽에 있는 D 탄광의 자료이다(朴慶植 編 1982 第1卷, 90).<sup>18)</sup>

표 3 북해도 D 탄광의 민족별 임금 분포 (단위: 명, %)

	30원미만	30-50	50-70	70-90	90-110	110-130	계
일본인	32 (3.6)	123 (14.0)	187 (21.3)	194 (22.1)	181 (20.6)	160 (18.2)	877 (100.0)
조선인	117 (36.1)	126 (38.9)	40 (12.3)	22 (6.8)	7 (2.2)	12 (3.7)	324 (100.0)

朴慶植(1965: 86)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인의 경우 50엔 이상이 82.3%인데, 조선인은 50엔 미만인 75.0%를 차지한다. 이 표를 근거로 박경식은 조선인의 임금의 일본인의 절반정도이며, 이는 “민족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표는 같은 문서의 「總括表」, 173-4쪽에 다시 등장한다. 그런데 그 바로 앞, 169-70쪽에는 “朝鮮人勤續年數”와 “內地人勤續年數”가 게재되어 있다. 여기에서 D 탄광의 연령분포를 발췌한 것이 표 4이다.

표 4 북해도 D 탄광의 민족별 근속연수 분포 (단위: 명, %)

	1년 미만	1~2년	2~3년	3~4년	4~5년	5년 이상	계
조선인	273 (74.8)	53 (14.5)	39 (10.7)	- (-)	- (-)	- (-)	365 (100.0)
일본인	276 (29.6)	123 (13.2)	106 (11.4)	101 (10.8)	42 (4.5)	285 (30.5)	933 (100.0)

자료: 본문 참조.

조선인은 근속연수 2년 미만이 89.3%이고, 2년 이상은 10.7%에 불과하다. 일본인은 2년 미만이 42.8%이며 2년 이상은 57.2%에 달한다.<sup>19)</sup> 표 4로부터 보건데, 표 3에서 조선인이 50엔 미만의 낮은 임금구간에 밀집되고, 일본인이 50엔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에 집중되어 있음은 근속기간으로 표현되는 작업능률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長澤秀는 常磐 炭田의 入山採炭(株)의 작업조의 구성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능률상의 차이에 대한 조사를 소개하였다. 이에 따르면, 일본인 4명과 조선인 3명으로 구성할 경우, 炭掘進 1명당 尺數는 0.8척인데 반해, 2년 근속한 조선인 8명으로 구성할 경우 0.51척(63.8%), 3개월의 훈련을 마친 조선인 8명일 경우 0.25척(31.3%)에 불과하였다(長澤秀 1987: 170). 근속연수, 즉 경험의 축적이 작업

18) 조사대상은 北海道の 6개 탄광, 本州의 3개 광산, 九州의 5개 탄광, 본주의 3개 토건업체, 그리고 본주의 2개 공장과 구주의 1개 공장, 총 20개 사업체이다. 조사내용은 생산관리, 노무자관리 및 후생 시설이고, 현장방문에 의한 실지조사였다(勞働科學研究所 1943a: 3-8)

19) 1년 미만자도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조선인을 압도적으로 1년 미만이였다. 2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모집’과 ‘관알선’에서의 계약기간이 2년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조선인들에게 계약연장을 위해 광산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조선에 있는 가족을 불러오거나, 조선으로 一時 귀향시키거나, 계약연장 수당을 지급하는 등, 기업 측에서 갖은 노력을 다할 만큼, 처음 2년간의 경험과 숙련은 탄광 측에게는 매우 귀중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능률을 결정함을 알 수 있다.

상기 「조사보고」에서 민족별 근속기간과 임금의 분포를 모두 알 수 있는 사례는 두 개가 더 있다. 먼저 표 5를 보자. D 탄광과 마찬가지로 북해도에 있는 B 탄광이다.

표 5 B 탄광의 근속기간과 임금 (단위: 명, %)

A 근속연수							
	1년 미만	1~2년	2~3년	3~4년	4~5년	5년 이상	계
조선인	194 (20.8)	524 (56.2)	215 (23.0)				933 (100.0)
일본인	2,263 41.8	861 15.9	523 9.7	448 8.3	305 5.6	1,017 18.8	5,417 100.0

  

B 임금							
	30원미만	30-50	50-70	70-90	90-110	110엔 이상	계
조선인	130 (13.7)	68 (7.1)	98 (10.3)	134 (14.1)	147 (15.4)	375 (39.4)	952 (100.0)
일본인	443 (8.7)	655 (12.9)	611 (12.0)	753 (14.8)	1,179 (23.2)	1,435 (28.3)	5,076 (100.0)

자료: 근속연수는 朴慶植 編 1982, 第1卷, 169-70, 임금은 80-1.

조선인의 근속연수는 D 탄광과 달리 1-2년에 집중되어 있고, 일본인은 근속기간 1년 미만의 신참이 42%나 된다. 하지만 2년 이상이 접하는 비중은 조선인은 23.0%, 일본인은 42.3%로 큰 차이가 있다. 이 두 가지 효과가 상쇄되면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임금분포는 D 탄광에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50엔 미만은 조선인과 일본인 각각 20.8, 21.7%, 50엔 이상은 79.2, 73.8%이다.

표 6 I 광산의 근속연수와 임금 (단위: 명, %)

A 근속연수							
	1년 미만	1~2년	2~3년	3~4년	4~5년	5년 이상	계
조선인	96 (33.8)	188 (66.2)					284 (100.0)
일본인	654 (31.9)	450 (21.9)	324 (15.8)	298 (14.5)	257 (12.5)	70 (3.4)	2,053 (100.0)

  

B 임금							
	30원미만	30-50	50-70	70-90	90-110	110-130	
조선인	38 (14.6)	53 (20.4)	69 (26.5)	47 (18.1)	34 (13.1)	19 (7.3)	260 (100.0)
일본인	73 (4.2)	222 (12.9)	469 (27.2)	403 (23.4)	299 (17.4)	256 (14.9)	1,722 (100.0)

자료: 근속기간은 朴慶植 編 1982, 第1卷, 54쪽, 임금은 174쪽.

I 광산에서는 2년 이상 근속한 조선인 광부가 하나도 없다. 반면 일본인은 46.2%가 2년 이상이다. 이를 반영하여 임금분포에서는 50엔 이하의 노무자가 조선인은 35.0, 일본인은 17.1%이다. 그만큼 50엔 이상의 임금을 받는 일본인 노무자의 비율이 조선인보다 높다. 임금의 “민족차별”에 대하여 박경식이 제시한 근거는 자료에 대한 일방적 해석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시기 조선인과 일본인의 임금은 기본적으로 작업능률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작업성과 즉 채탄, 채광량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었고, 근속기간이 작업능률에 영향을 미쳤음은 논리적으로 명백한 간단한 사실이다. B 탄광과 I 광산의 근속연수와 임금의 분포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박경식은 자신이 수집·정리하여 이후 편찬하게 되는 자료집 속에 들어갈 중요한 자료 전체를 개관조차하지 않은 채, 일부분만 떼어내어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론을 선부르게 내놓은 것이다.<sup>20)</sup>

박경식의 오류는 지난 50여 년간 단 한 차례도 비판적으로 검토되지 못했고, 그의 논지는 오늘날까지 반복되었다. 김민영은 박경식이 제시한 복해도 D 탄광의 임금분포를 그대로 제시하면서 일부 증언에 기초하여 조선인의 임금은 일본인의 절반 또는 그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하였다(1995: 138-41). 전기호는 금광산으로 유명한 일본광업주식회사의 18개 광산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민족적 임금차별”을 주장하였다(2013: 102-4). 주목되는 바가 있어 여기에 표 7로 옮긴다. 1943년 3월 갱내부와 갱외부의 평균임금이다.

전기호는 조선인 갱내부 임금은 “일본인의 75~85%”라고 하였는데, 엄격히 말해 평균 86.8%이다. 이 정도의 차이를 민족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단, 광산별로 차이가 커서 조선인 임금이 일본인 임금의 73.6%에 불과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112.2%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白瀧과 馬上 광산의 경우 조선인의 임금이 더 높다는 점도 지적해 둔다. 갱외부의 경우 일본인의 94.1% 수준에 달하였으며, 특히 北隆 등 7개 광산에서 조선인의 임금이 일본인보다 높다. 갱외부 임금의 광산간 격차는 갱내부보다 더욱 커서 조선인 임금이 일본인 임금의 67.8인 광산부터 129.7%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있다.

20) 「半島勞務者勤勞狀況に關する調査報告」는 朴慶植 編(1982) 『朝鮮研究資料集』 全 4권 중 第1卷에 포함되어 있다.

표 7

## 일본광업주식회사의 임금

(단위: 임금은 円, 임금격차는 %)

광산명	갱내부			갱외부		
	조선인	일본인	임금격차	조선인	일본인	임금격차
北隆	3.435	4.038	14.9	2.912	2.771	-5.1
豊羽	4.207	5.586	24.7	3.171	3.055	-3.8
惠庭	3.534	4.327	18.3	2.826	3.364	16.0
大金	3.806	5.091	25.2	2.712	3.251	16.6
上北	3.631	4.283	15.2	2.695	2.868	6.0
赤石	3.395	3.493	2.8	-	2.572	-
花輪	3.127	4.149	24.6	2.378	2.475	3.9
大谷	3.050	3.232	5.6	2.551	2.079	-22.7
高玉	2.342	3.091	24.2	1.524	1.958	22.2
日立	3.112	4.226	26.4	1.823	2.688	32.2
日光	2.321	2.797	17.0	2.293	2.169	-5.7
三川	3.031	3.801	20.3	1.561	2.221	29.7
峰が澤	2.804	2.843	1.4	2.283	2.250	-1.5
尾小屋	3.394	4.110	17.4	2.406	2.446	1.6
白瀧	3.614	4.073	11.3	2.291	2.171	-5.5
馬上	3.660	3.262	-12.2	1.322	1.900	30.4
王の山	3.170	2.998	-5.7	2.893	2.230	-29.7
春日	2.696	2.880	6.4	2.512	2.986	15.9

주 : 임금격차는 '(일본인임금 - 조선인임금)\*100/일본인임금'으로 계산하였고 아래도 같음.

자료: 전기호(2003: 103)

조선인 임금이 일본인보다 높은 광산의 존재와 관련하여, 전기호는 “일본인 남자 갱외부가 줄어들고, 아울러 일본인 여자 갱외부나 임시 갱외부가 늘어나면서 임금수준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국인 갱외부 임금이 상대적으로 고을”이 된 것이라고 하였다. 전술하는 바와 같이 전시기를 통해 일본인과 조선인의 명목임금은 모두 상승하였고, 조선인 갱내부의 임금이 일본인 갱내부보다 높은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즉 일본광업주식회사에서 조선인 갱외부의 임금이 높은 예들이 있는 것은 일본인 갱외부의 임금이 하락해서가 아니라, 조선인의 임금상승 폭이 일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말해서, 표 7이 보여주는 것은 현저한 민족간 임금격차가 아니라,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존재했던 약간의 작업능률의 차이에 훨씬 가까운 것이다.

전시기에 광산에서, 최소한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민족적 임금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반드시 새로운 것만은 아니다. 한국 학계에서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다. 일찍이 長澤秀는 상반탄광의 조선인 임금은 청부제에 따라 生産高에 따라 지급되었는데, 이는 일본인과 동일하고, 또 개인의 임금은 작업 구역 내 총작업량, 개인이 가진 권리 비율(이 경우에는 대선산 11푼, 선산 10푼, 후산 9푼5리~9푼, 신입 8~7푼5리) 및 출근일수에 기초하여 할당되는 것이라고 하였다(1977: 130). 1987년의 논문에서도 동 탄광의 채탄부 임금은 請負單價에 기초한 생산고불로 일본인과 동일하게 집단청부에 의한 생산고불 제도를 따르며,

기타 직종은 정액일급제이고, 임금의 직종별 격차는 있지만 민족별 차이는 없으며, 다른 회사들도 모두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하였다(長澤秀 1987: 168-9). 市原博은 탄광에서는 작업의 능력과 직종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었는데, 이를 조선인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고, 그런 이유로 임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민족차별이 아니라 조선의 송출기구에 내재한 문제로 파악하였다(1997: 26). 송출기구의 문제란 임금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소개하지 않았음을 뜻하며, 이는 조선총독부의 문제가 아니라, 모집을 담당하였던 일본 탄광산의 勞務計의 책임이었다.

金屬山에 대해서는 相澤一正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岩手縣 六黒見 金山에서 조선인에게 임금을 등급에 따라 지급했으며, 이는 일본인과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조선인 고용 목적이 저임금에 의한 이윤을 증가가 아니라 노동력 보충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1988: 242). 이윤을 증가와 노동력 보충이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노무자 총원이 제1의 목표였던 당시의 상황을 옹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西成田豊은 조선인의 임금은 일본인보다 약간 낮지만, 그것은 기능의 차이이며 민족적 차별임금 없었고, 하지만 강제저축으로 인해 조선인 광부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적었다는 사실이 실질적 수탈이라고 주장하였다(1997: 274-7). 강제저축과 그로 인해 노무자에게 주어지는 현금의 감소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다.

북해도의 탄광 노무자에 대해서는 市原博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1940년, 가지내광업부의 조선인 임금은 일본인에 비해 3할 가량 낮은데, 이는 언어불통과 기능미숙에 의해 발생하는 작업능률의 차이일 수 있다고 하였다(1991: 103). 朝鮮人強制連行實態調査報告書編輯委員會의 연구에 따르면, 北海道炭鑛汽船株式會社の 탄광에서 작업은 청부형태로 이루어졌고,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임금 구별은 없었으며, 이것이 사내 규정이었다는 것이다. 즉 노무자 사이의 “경험(근속연수) 즉 작업능력이 임금 차이”를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1999: 48-51). 최근의 연구로는 Palmer를 들 수 있다. 임금체계는 일본인과 동일하였다는 주장이다(2013: 283).<sup>21)</sup> 이와 관련된 증언으로는 九州 탄광에서 “더 하면 더 주고 못하면 덜 준다”거나(위원회 2006b: 177), 北海道에서 “많이 실으면 돈을 더 낮게 주고, 적게 실으면 돈을 적게” 준다는(위원회 2007b: 153) 기사를 참고할만하다.

#### IV. 임금격차의 추이

戰時期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임금격차는 어떻게 추이하였을까? 또 전간기의 임금격차를 전시기와 비교하면 그 격차는 증가하였을까, 아니면 감소했을까? 현재 상황에서 이에 답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나마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여 가능한 추론을 제시하는 것이 이 절의 목표이다. 먼저 표 8은 福岡縣에 있는 赤池 탄광의 자료인데, 1944년 7월부터 1945년 10월까지 採炭夫와 仕操夫(갱도나 막장의 지탱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민족별 1일 평균임금이 담겨있다. 전시기에 탄광에 동원된 조선인들은 대부분 坑内夫로 일하였고, 갱내부 중에서도 採炭夫가 가장 많았다(이우연 2015). 그만큼 중요하고, 이 시기를 커버하는 임금자료로는 유일한 것이지만, 1991년에 공간된 이후 단 한 번도 이용된 적이 없다. 전술한 강제저축, 食代 등, 임금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너무 많고 그 액수가 너무 커서 임금은 사

21) 그는 軍屬의 임금 또한 일본인과 차별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300).

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거나, 임금의 민족차별이 매우 심하였다는 통설이 연구자들의 눈을 가리게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표 8

明治鑛業所 赤池炭鑛의 임금

(단위: 임금은 円, 임금격차는 %)

연	월	採炭夫			仕繰夫		
		조선인	일본인	임금격차	조선인	일본인	임금격차
1944	6	4.17	4.29	2.8	3.82	3.94	3.0
	7	4.28	4.51	5.1	3.83	3.96	3.3
	8	4.28	4.39	2.5	3.82	3.92	2.6
	9	4.21	4.32	2.5	3.88	3.97	2.3
	10	4.32	4.42	2.3	3.84	3.98	3.5
	11	4.41	4.58	3.7	3.95	3.93	-0.5
	12	4.49	4.56	1.5	4.01	4.04	0.7
	평균	4.31	4.44	2.9	3.88	3.96	2.1
1945	1	4.61	4.68	1.5	4.08	4.20	2.9
	2	4.72	4.89	3.5	4.01	4.19	4.3
	3	4.77	4.96	3.8	4.00	4.43	9.7
	4	4.56	4.32	-5.6	4.96	5.21	4.8
	5	4.62	4.39	-5.2	4.93	5.19	5.0
	6	5.15	5.14	-0.2	5.04	5.11	1.4
	7	5.29	5.33	0.8	5.20	5.29	1.7
	평균	4.82	4.82	0.0	4.60	4.80	4.2

자료: 「明治鑛業所勞務月報」各 月號, 林えいだい 編(1991), 『戰時外國人強制連行關係史料集』II 1 下卷, 1153-1220.

표 8에서 종전이전 14개월간 조선인과 일본인 채탄부의 임금격차는 0.8-5.0%, 사조부의 그것은, 예외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1945년 3월을 제외하면, 1.4-5.0%에 불과함을 볼 수 있고, 이 또한 민족차별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역시 작업능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채탄부의 경우 1945년 5-6월, 사조부의 경우에는 1944년 11월에는 조선인 평균임금이 일본인보다 높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1944년, 조선인 채탄부의 임금은 일본인에 비해 2.9% 낮은 수준이었는데, 1945년에는 미미하나마 그 관계가 역전되고 있다.<sup>22)</sup> 1944년, 조선인 사조부의 임금은 일본인에 비해 2.1% 낮았고, 1945년에는 그 격차가 4.2%로 증가하였다. 1943년 9월 현재, 일본에 동원된 조선인 갱내부 중 채탄부의 비율은 46.4%, 사조부는 11.7%였다(石炭統制會 勞務部 1943). 이를 고려하면 적지 탄광에서는 1944년에 비해 1945년에는 민족간 임금격차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하, 민족간 임금격차의 추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단편적이거나 몇 가지 자료를 더 제시하겠다. 茨城縣의 日立鑛山의 1942년 자료에 의하면, 조선인과 일본인의 평균 月收는 각각 52.96, 59.46円인데, 월평균 稼動日數는 21.9일과 24.9일로 일본인 쪽이 더 많았다. 월수입을 이로 나누면 평균 일수입이 되는데, 각각 2.42, 2.39円으로 미미하지만 조선인이 더 높

22) 표 6에서는 0.0%로 표기하였지만, 실수는 -0.03이다. 즉 조선인의 1945년 임금은 일본인에 비해 0.03% 높았다.

다(勞働事情調査所 1942: 90). 이것이 노동능률을 반영하는 것인지 어떤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당시 일본인 노무관계자들 중에는 위와 같은 상황을 조선인에 대한 경제적인 “특수한 대우”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sup>23)</sup> 이런 이유로 “훈련기간 종료 후 조선인과 동일한 대우”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는 일본인도 있었다(外村大 2012: 67).<sup>24)</sup> 勞働科學研究所가 조사한 북해도 모 탄광의 갱내부 임금에서 채탄부, 사조부 및 기계부의 日收 임금은 조선인 쪽이 더 높고, 운반부, 工作夫, 그리고 雜夫의 임금은 일본인이 더 높았다(1943b, 朴慶植 編 1976, 第5卷, 772). 이러한 사례들이 있기에 Wagner는 “조선인 탄광부는 일본인과 같은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였고(1951: 46)<sup>25)</sup>, Mitchell은 조선인 노무자들이 “일본인 징용자보다 더 나쁜 대우를 받지 않았으며, 일부는 오히려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었음을 일찍이 지적하였던 것이다(1967: 85).

다음으로 소개하는 자료도 아직 이용된 바 없다. 福島縣에 있는 常磐炭鑛은 1944년 12월, 다음해의 임금인상을 계획하면서 그에 따라 증가되는 비용을 추산하였다. 여기에 쓰인 1일 평균수입은 표 9와 같다. 우선 임금격차가 적지탄광보다 크다. 그 이유는 역시 탄광부의 근속연수에 있어서 적지탄광과 다른 분포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쉽게도 해당 자료가 없다. 그에 대신하여 상반탄광 炭夫의 연령구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 표 10으로 게재하였다.

표 9 常磐炭鑛의 임금 (단위: 임금은 円, 임금격차는 %)

종별	갱내 남자			갱외 남자		
	조선인	일본인	임금격차	조선인	일본인	임금격차
舊 平均日收	4.127	4.998	17.4	2.797	3.805	26.5
新 平均日收	4.947	5.743	13.9	3.594	4.400	18.3

자료: 常磐炭鑛(株)(1944) 「勞務關係者優遇關係綴(昭和 19年, 20年)」, 長澤秀 編(1996), 『戰時下強制連行極秘資料集』III 東日本編, 381-5.

磐城 탄광의 수치는 상반 탄광과 달리 조선인만 아니라 그보다 많은 수의 일본인도 포함하는 전체 광부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조선인과 일본인의 연령분포를 비교할 때는 조선인의 연령이 근속연수가 아니라 일본으로 동원될 때의 나이에 가깝다는 점도 주의해야한다. 조선인은 계약기간이 2년이며, 계약기간 만료 후에 기간을 연장하는 자는 매우 적고 만료 이전에 도주하는 자가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일본인 광부들은 고용현장에서 그대로 징용되는 현원징용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일본인들의 연령분포는 조선인보다 근속연수를 반영하는 성격이 훨씬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0에서 상반탄광의 조선인은 62.1%가 20대에 집중되어 있고, 반성탄광은 상반탄광에 비해 훨씬 고른 연령분포를 보인다. 즉 상반탄광의 조선인들 중에는 수년의 작업경험과 그에 의해 기량을 축적한 광부들이 일본인에 비해 훨씬 적었음을 뜻

23) 주우광업소에서는 “반도노무동원은 고용 후 3개월은 훈련기간이며 조선총독부에 있어서도 특히 이 기간 중의 대우, 훈련 등에 대해 간섭, ... 관심을 갖고 있고 임금 등에 대해서도 보증할 수 있는 무언가를 요구해왔다. 당 광산의 勞務統理의 고찰 방식으로 보면, 이것은 半島勞務員에게만 인정되는 특수한 대우(경제적 방면에서 말하면 대체로 우대한다)이므로, 다른 일반노무원과 다르게 취급”한다고 하였다(株式會社住友鴻之舞鑛業所 1941, 守屋敬彦 編 1991, III 朝鮮人 2 下卷, 1483)

24) 원자료는 『特高月報』1940年 11月 號이다.

25) 원자료는 U. S. Strategic Bombing Survey: Coals and Metals in Japan's War Economy이다.

하는 것이다. 따라서 표 9에 나타난 민족 간 임금격차는 작업능률에 있어서 조선인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표 10

광부의 연령분포

(단위: 명, %)

연령	조선인 광부 수 (상반탄광)	구성비(%)	전 광부 수 (반성탄광)	구성비(%)
15-20세	435	9.2	752	14.4
21-25	1,587	33.4	894	17.2
26-30	1,365	28.7	905	17.4
31-35	614	12.9	856	16.4
36-40	475	10.0	797	15.3
41-45	197	4.1	637	12.2
46-50	66	1.4	371	7.1
51-55	11	0.2		
56세 이상	4	0.1		
계	4,754	100.0	5,212	100.0

주 : 상반탄광은 1944년 10월말, 반성탄광은 1943년 10월말 현재.

자료: 長澤秀(1987: 175).

표 9에서도 탄광부의 민족간 임금 격차가 1944년에 비해 1945년에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守屋敬彦은 북해도 住友鴻之舞鑛業所의 자료를 근거로 “1工當 임금의 昇給은 조선인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일본인보다 6개월에서 1년간량 늦게 이루어졌지만, 관알선 단계의 후반에는 우수한 노무자부터 그 차별을 없애고, 징용 단계에 이르면 기본적으로 없애간다”고 하였다(2009:3-10).<sup>26)</sup> 전시기에 민족차별이 점차 사라졌다는 것인데, 현재의 자료상황에서는 일반화하기 곤란하고, 이후 자료의 발굴과 함께 신중히 검토할만하다.

또 하나의 중요한 논점은 戰前期와 戰時期의 민족간 임금격차를 비교하여 전시기 임금격차의 성격을 규명하는 일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로서는 아쉽게도 그러한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는 우선 현재까지 발굴된 전전기와 전시기의 임금 자료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광업주식회사의 자료는 1943년 3월뿐이며, 1년 이상이 되는 시계열을 갖는 자료는 명치광업소 적지탄광 뿐이다. 전전기의 일본 본토 탄·광부의 민족별 임금 자료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의 자료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추이를 살펴보는 데 일단의 실마리가 되기에 그를 열거하겠다.

朴慶植은 1921년 조선인 갱부의 임금은 일본인 갱부의 60%라고 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시기에 들어가면서 민족 간 임금격차가 크게 감소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1965: 39). 단, 朴慶植은 그 수치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아쉽다. 둘째로 大阪市 社會部 調査課의 자료 속에 1923년 6월의 민족별 갱부 임금이 최고, 보통, 최저로 나누어 기재된 표가 있다. 조선인 갱부의 최고 임금은 일본인보다 23.3%, 보통은 16.0%, 최저는 11.1% 낮다. 전시기 적지탄광의 임금격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 일본광업소와 常磐炭鑛의 민족간 격

26) 1工은 회사에 따라 약간 다른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갱내 9시간 작업, 갱외 10시간 작업을 말한다. ‘관알선’은 1942년 2월부터, ‘징용’은 1944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守屋慶彦이 근거로 하는 자료는 住友鴻之舞鑛業所의 「勞務員 職名·番號 1 決定賃金 變更通知書」이다.

차와 비교하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 되어 격차의 증감을 말하기는 곤란하다.

세 번째는 정진성이 인용하고 있는 福岡地方 職業紹介事務局의 자료로 '1928년 조선인 광부 임금은 일본인보다 2-3할 낮다는 서술이다(1989: 208). 전술한 적지탄광도 福岡縣에 소재하므로, 양자를 비교하면 전시기에 민족간 임금격차가 감소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네 번째 자료도 대판의 자료인데, 1930년 10월의 중분류에 근사한 공업임금과 토목건축업의 임금이다. 조선인 토목건축업 노동자의 임금은 일본인의 67.1%에 불과하며, 공업 임금도 70.2%로 큰 격차를 보인다. 이를 전시기 광업임금과 비교하면 민족 간 격차가 감소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단, 공업임금은 대체로 職工=숙련노동자의 임금이라는 점에서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끝으로 일본 본토 전체를 커버하는 유일한 조사결과로 社會局 第一部의 1924년 7월 탄·광부 임금이 있다. 다음 표 11은 그중에서 광부의 임금을 발췌한 것이다.

표 11

광업임금

(단위: 임금은 円, 임금격차는 %)

현명과 직종	민족	최고	보통	최저
福岡 채광야금업	일본인	3.40	2.00	0.90
	조선인	2.90	1.50	0.80
	임금격차	14.7	25.0	11.1
佐賀 채광업	일본인	2.00	1.80	1.50
	조선인	1.80	1.70	1.50
	임금격차	10.0	5.6	0.0
山口 채광업	일본인	3.60	2.00	1.50
	조선인	3.50	1.90	1.50
	임금격차	2.8	5.0	0.0
福島 채광야금업	일본인	2.50	1.50	1.00
	조선인	2.50	1.50	1.00
	임금격차	0.0	0.0	0.0
茨城 광업	일본인	2.80	2.00	1.20
	조선인	2.50	1.67	0.70
	임금격차	10.7	16.5	41.7
北海道 채광야금업	일본인	3.97	2.50	1.60
	조선인	3.00	2.50	1.80
	임금격차	24.4	0.0	-12.5

표 11에서 직종이 채광야금업, 채광업, 광업 등으로 되어 있고, 이는 이 조사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수행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福岡은 茨城과 함께 일본 3대 炭田의 하나인 常磐炭田에 속하는데, 茨城과 달리 민족간 임금격차가 전무하다. 北海道에서도 임금격차가 없거나, 조선인의 임금이 일본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온다. 이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이 표를 통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조선인의 임금과 일본인과의 임금격차가 탄광·광산에 따라 상당히 달랐다는 점이다. 1920년대 이후 1945년까지의 민족 간 임금격차의 추이를 살펴 보기 위해서는 결국 개별 기업의 임금자료가 공개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sup>27)</sup> 이

27) 田中直樹에 따르면 日本窒素 江迎鑛業所の 『賃金臺帳』이 九州大學 産業勞動研究所에 보관되어 있었다(1978: 609). 이 자료로부터 계산하면, 채탄부의 1일 평균임금은 조선인이 4.22円, 일본인 5.06

들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전시기 이전의 민족간 임금격차가 전시기에 감소하였다는 가설을 명확히 검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가총동원이라는 총력전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산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노무자들에게 유인을 제공해야 했고, 전시화 화폐의 증발과 전시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풍부한 자금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금전적인 이유로 생산능률과 무관하게 조선인을 차별할 이유가 없고, 전시체제를 유지함에 있어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개별 광산의 개별 직원이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에 젖어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 IV. 맺음말

본고에서는 이 “강제연행·강제노동”을 주장하는 선학들이 펴낸 자료들에 근거하여, 전시기 탄·광부들이 받은 임금은 조선의 가족들에게 보낼 송금과 현지에서의 소비를 배분하는 선택이 가능한 수준이었음을 보였다. ‘임금은 없거나 극히 소액에 불과하였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은 실증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다. 조선인 탄·광부의 임금은 일본인의 그것과 그리 큰 차이가 있는 액수는 아니었고, 따라서 선행연구들에서 주장되는 바와 같이 “임금의 민족차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본 연구는 실증하였다. 또한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임금격차가 전시기에 축소하였음을 시사하는 연구와 자료가 있고, 전간기에 비해 전시기에 그것이 축소하였음을 나타내는 사례들이 있으며, 이 논점과 관련해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차원의 자료들이 공개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임금 중 강제저축으로 공제되는 액수가 매우 컸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저축금은 조선인들에 의해 공정하게 인출되었는가? 또한 조선인들이 조선의 가족에게 행한 송금은 제대로 가족에게 전달되었는가? 조선인에게 지불된 임금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들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할 연구가 없다. 필자의 후속하는 연구과제가 이것이다. 이렇게 송금과 강제저축을 재검토하는 것, 또 “강제연행”의 성격을 밝히고, 도주, 분쟁 등 조선인의 저항으로부터 양복과 다양한 음식의 구입, 음주, 도박, 휴일, 외출 등에 이르는 일상생활의 실태를 밝혀 전시기 일본으로 동원된 조선인 탄·광부들의 일상을 재구성함을 다음번 과제로 삼겠다.

---

円, 支繰夫(仕繰夫)는 각각 3.34, 4.27円이었다고 한다. 이 『賃金臺帳』은 조선인과 일본인을 불문하고 노무자 1명에 1매씩, 1개월간의 작업 상황, 稼動賃金, 각종 수당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며, 현재는 구주대학 石炭研究資料센터에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종류의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참고문헌

- 「半島勞務者勤勞狀況に關する調査報告」, 朴慶植 編(1982), 『朝鮮研究資料集』第1卷, 26-208.
- 「移入勞務者訓練及取扱要綱」, 長澤秀 編(1992), II 『戰時下朝鮮人中國人聯合軍俘虜強制連行資料集』II, 綠蔭書房, 53-80.
- 「朝鮮人勞働者内地移住に關する方針」, 朝鮮人強制連行實態調査報告書編輯委員會 編(1999), 『北海道と朝鮮人勞働者』, 札幌學院大學生活協同組合, 483.
- 「朝鮮人勞務者活用に關する方策」, 朴慶植 編(1976)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第4卷, 24-5.
- 國民總力朝鮮聯盟(1944), 『國民徵用の解説』, 國民總力朝鮮聯盟.
- 內務省 社會局 第一部(1924), 「朝鮮人勞働者に關する狀況」, 朴慶植 編(1976),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第1卷, 428-529.
- 勞働科學研究所(1943a), 「半島勞務者勤勞狀況に關する調査報告」, 勞働科學研究, 朴慶植 編(1982), 『朝鮮研究資料集』第1卷, 1-179.
- 勞働科學研究所(1943b), 「炭墻における半島人勞務者」, 勞働科學研究所, 朴慶植 編(1976),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第5卷, 韓國學振興院, 755-78.
- 勞働科學研究所(1943c), 『半島人勞務者の作業能力に關する科學的見解』, 朴慶植 編(1981), 『朝鮮研究資料集』第1卷, 3-25.
- 勞働事情調査所(1942), 『日立鑛山に於ける半島人勞務者と語ろ』, 朴慶植 編(1982), 『朝鮮研究資料集』第1卷, 56-96.
- 大阪市 社會部 調査課(1924), 「朝鮮人勞働者問題」, 朴慶植 編(1976),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第1卷, 339-96.
- 大阪市 社會部(1933), 「朝鮮人勞働者の近況」, 朴慶植編(1976),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第五卷, 三一書房, 779-816.
- 東京地方鑛山部會(1943), 「朝鮮人勞務管理研究協議會開催要綱」, 長澤秀 編(1992), 『戰時下朝鮮人中國人聯合軍俘虜強制連行資料集』II, 綠蔭書房, 143-65.
- 明治鑛業所, 「明治鑛業所勞務月報」各 月號, 林えいだい 編(1991), 『戰時外國人強制連行關係史料集』II 1 下卷, 1153-1220.
- 磐城炭鑛(연대불명), 「就業規則」,
- 福岡地方職業紹介事務局(1929), 「官内在住朝鮮人勞働事情」, 박경식 편(1975),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II(2), 1079-1135.
- 司法省刑事局(41) 「勞務動員計画に基く内地移住朝鮮人勞働者の動向に關する調査」, 『思想月報』79号, 朴慶植 編(1981), 『朝鮮研究資料集』第4卷, 1232-51.
- 産業勞働調査所, 「移入半島勞務者の希望とその對策に於ける勞務管理」, 『勞務時報』 189號(1942.10.15.).
- 常磐炭鑛(株)(1944), 「勞務關係者優遇關係綴(昭和 19年, 20年)」, 長澤秀 編(1996), 『戰時下強制連行極秘資料集』III 東日本編, 381-5.
- 石炭統制會 九州地部(1945), 「炭山に於ける半島人の勤勞管理」, 朴慶植 編(1991), 『朝鮮研究資料集』第2卷, 1-245.
- 石炭統制會 勞務部(1943), 「炭鑛勞務統計表」, 長澤秀 編(1981), 『戰時下朝鮮人中國人聯合軍俘虜強制連行資料集』I 朝鮮人強制連行(統計編), 綠蔭書房, 313-39.

- 日本鑛山協會(1940), 「半島人勞務者に關する調査報告」, 朴慶植 編(1981), 『朝鮮研究資料集』 第2卷, 1-300.
- 前田一(1943), 『特殊勞務者の勞務管理』, 山海堂.
- 朝鮮總督府 殖産局, 『朝鮮鑛業の趨勢』 1940年版.
- 朝鮮總督府(1942), 「朝鮮人内地移入斡旋要綱」, 朴慶植 編(1976)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第4卷, 1254-7.
-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40年版.
- 住友鑛業(株)歌志内鑛業部(1940b), 「朝鮮人勞働者内地移住に關する事務取扱手續」 長澤秀 編(1996), 『戰時下強制連行極秘資料集』 II 東日本編, 綠蔭書房, 13-6.
- 住友鑛業(株)歌志内鑛業部(1940c), 「就業案内」, 長澤秀 編(1996), 『戰時下強制連行極秘資料集』 II 東日本編, 綠蔭書房, 21-5.
- 住友鑛業(株)歌志内鑛業部(1945), 「進駐軍關係綴」 長澤秀 編(1996), 『戰時下強制連行極秘資料集』 III 東日本編, 409-18, 綠蔭書房.
- 住友鑛業(株)鴻之舞鑛業部(1941), 「半島勞務員統理綱要」, 守屋敬彦 編(1991), 『戰時外國人強制連行關係史料集』 III 朝鮮人 2 下卷, 1443-85.
- 厚生·内務 兩省(1939)「朝鮮人勞働者募集要綱」, 長澤秀 編(1996), 『戰時下強制連行極秘資料集』 II, 綠蔭書房, 11-2.
- 厚生省(1942), 「移入勞務者訓練及取扱要綱」, 長澤秀 編(1992), 『戰時下朝鮮人中國人聯合軍俘虜強制連行資料集』 II 朝鮮人強制連行(文書編), 綠蔭書房, 55-80.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5), 『당꼬라고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6a), 『가긴 어딜가? 헌병이 총 들고 지키는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6b), 『똑딱선 타고 오다가 바다 귀신 될 뻔 했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7a), 『지독한 이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7b), 『수족만 멀쩡하면 막 가는 거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9a), 『아홉머리 넘어 북해도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김민영(1995), 『일제의 조선인노동력수탈 연구』, 한울.
- 이상익(2014), 「행방 후 일본에서의 조선인 미수금 공탁 과정과 그 특징」, 『동북아역사논총』 45, 11-45.
- 이우연(2015), 「전시기 일본의 조선인 노무동원과 탄광의 노동환경」, 낙성대경제연구소 워킹페이퍼 WP2015-10.
- 전기호(2003), 『일제시대 재일 한국인 노동자 계급의 상태와 투쟁』, 지식산업사.
- 정진성(1989), 「1920年代의 朝鮮人 使用 狀況 및 使用 經費 -日本 치쿠호(筑豊)地方의 미쯔비시(三菱) 炭鑛을 中心으로-」, 『韓國資本主義論』, 한울.
- 정혜경(2006), 『조선인 강제연행 강제노동 I 일본편』, 景仁文化社.

- 정혜경(2011), 『일본 제국과 조선인 노무자 공출』, 선인.
- 허광무(2014), 「일제말기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의 미불금 피해 실태 -구슈(九州)지역의 미불금 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45, 47-82.
- 古庄正(2012), 「아시오 구리광산(足尾銅山), 朝鮮人 戰時動員의 企業責任 -무라카미 야스마사(村上安正)의 批判에 答하다-」, 『한일민족문제연구』 23, 349-68.
- 林えいだい(1991a), 「解説」, 『戦時外国人強制連行関係史料集』 II 1 上, 明石書店, 5-40.
- 朴慶植(1965),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박경옥 옮김(2008)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 고즈윈.
- 山田昭次(1978), 「戦時下常磐炭田の朝鮮人労働者について」, 『近代民衆の記録 10巻 在日朝鮮人』, 新人物往來社明, 643-652.
- 相澤一正(1988), 「朝鮮人強制連行とその労働・生活」, 木戸田四郎教授退官紀念 論文集 編輯委員會 編, 『近代日本社會發展史論』, 227-67.
- 西成田豊(1997), 『在日朝鮮人の「世界」と「帝國」國家』, 東京大學出版會.
- 守屋敬彦(1991a), 「支拂依頼書類綴よりみたる住友鴻之鑛山朝鮮人強制連行」, 『道都大學紀要』 10, 1-31.
- 守屋敬彦(1995), 「朝鮮人強制連行における募集・官斡旋・徴用方式の一貫性」, 『道都大學紀要』 14, 13-69.
- 守屋敬彦(1996), 「アジア太平洋戦争下の朝鮮人強制連行と遺家族援護」, 『道都大學紀要』 15, 81-138.
- 守屋敬彦(2009), 「企業資料中各種名簿類記述内容から分かる朝鮮人強制連行に関する事實」, 『2009 네트워크 관계자 초청 워크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3-1 - 3-30.
- 市原博(1991), 「戦時下の朝鮮人炭鉱労働の実態」, 『エネスギー史研究』 15, 99-114.
- 市原博(1997), 「戦時下日本企業の朝鮮人管理の実態」, 『土地制度史學』, 157, 17-30.
- 外村大(2012), 『朝鮮人強制連行』, 岩波書店.
- 原朗(1976), 「戦時統制の開始」, 『岩波講座 日本歴史』 20 近代 7, 215-68.
- 長澤秀(1977), 「常磐炭田における朝鮮人労働者似つて」, 『駿台史學』 40, 92-121. 梁泰昊編(1993), 『朝鮮人強制連行論文集成』, 明石書店,
- 長澤秀(1987), 「戦時下上磐炭田における朝鮮人労働者の労働と闘い」, 『史苑』 47(1), 梁泰昊編, 『朝鮮人強制連行論文集成』, 明石書店, 146-204에 재수록.
- 田中直樹(1978), 「戦時期における朝鮮人鑛夫の雇用状態」, 『近代民衆の記録 10 在日朝鮮人』, 新人物往來社.
- 朝鮮人強制連行實態調査報告書編輯委員會(1999), 『北海道と朝鮮人労働者』, 札幌學院大學生活協同組合.
-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團(1974), 『朝鮮人強制連行強制労働の記録』, 現代出版社.
- Cohen, Jerome Bernard 1949. *Japan's economy in war and reconstruction*, Minneapolis : Univ. of Minn. Press.
- Cook, Haruko Taya and Cook Theodore(1992), *Japan at War An Oral History*, New York: The New Press.

Mitchell, Richard(1967) *The Korean minority in Japan*,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almer, Brandon(2013), *Fighting For The Enemy, Koreans in Japan's War, 1937-1945*, University of Washing Press.

Wagner, Edward W(1951), *The Korean Minority in Japan, 1904-1950*, New York: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外務省アジア局北東アジア課 譯(1989), 『復刻板 日本における朝鮮少数民族 : 1904-1950年』, 龍溪書店.